

예방접종의 효능 및 부작용

김정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교수

I. 부작용시 조치사항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사가 미리 알려준 부작용 외에 심상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사에게 전화로 알아보거나 방문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아기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상세히 날짜와 시간별로 기록하여 의사에게 보고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주며 또 의사는 보건소에 부작용을 등록해 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제도가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중한 부작용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신고의무도 개정되는 전염병 예방법에는 명시될 예정이다.

2.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에 관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켜도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서 예방접종을 기피할 경우 전염병의 유행으로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가는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로써 1994년 국가 보상제도를 만들어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보상의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이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사망, 장애, 그리고 중증의 질병 등이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

〈표 1〉 예방접종의 효능 및 부작용

예방접종 항목	예방접종 효능	부작용
BCG	속립성 결핵과 결핵성 뇌수막염의 감소효과	국소제약, 국소적 화농성 임파선염(0.1~0.5%, 1세 미만), 파종성 감염 및 BCG감염증, BCG콜수염:드물다.
플리오	95%	경구용에서 드물게 소아마비 증세
DPT	방어율=95% 보호율=85%	흔한 국소반응:국소 종창, 발적, 동통, 발열
B형 간염	85~95%	경한 국소반응(25%):동통, 종창(붓는 것), 경결(딱딱해짐) 전신증상:간혹 발열, 구토, 관절통, 발진 드물게 Guillain-Barre 증후군
MMR	홍역=95% 볼거리=95% 풍진=95%	홍역:발열(5~15%, 접종 6일 후), 발진(5%, 접종 7~10일), 뇌염, 뇌증, 뇌신경마비, 소뇌성 운동실조, Guillain-Barre 증후군(1/100만), 드물게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중독성 표피괴사용해증 볼거리:매우 드물게 이하선염(7~10일 후), 미열, 발진, 소양감, 두드러기 등 풍진:소수에서 미열, 발진, 임파절 종창. 관절통(40%), 관절염(2% 미만)-사춘기 여자에 많다. 매우 드물게 일시적 이상감각, 팔다리 통증과 말초신경염 증상, 중추신경계 합병증, 혈소판 감소, 혈관염, 근염 등
일본뇌염	80~90%	두통, 권태감, 발열, 국소동통, 복통, 부종(1% 미만), 아나필락시스, 심한 지연과민반응이 흔함(10일간 관찰), 중추 신경계 증상(1/100만), 사망(1 /1000만)

벼운 부작용은 제외된다. 즉, 입원치료시 입원일자가 3일 미만이거나 본인부담의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의 종류는 진료비·정액 간병비·장애인 일시보상금·사망자 일시보상금·장례비 보상 등이다. 표 2는 국가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에 없는 것이라도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표 2〉 국가보상의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피해의 범위

접종의 종류	임상 증상	접종 후 증상발현까지의 시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Td, DT, DTaP), 일본뇌염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기타 증추신경계 증상 3. 심혈관계 혀탈 4. 사망을 포함한 1, 2, 3의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기한없음
홍역, 풍진, 볼거리(MMR)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기타 증추신경계 증상 3. 사망을 포함한 1, 2, 3의 후유증	24시간 이내 21일 이내 기한없음
경구용 폴리오	1. 급성 마비성 회백염(정상 면역인) 2. 급성 마비성 회백염(면역기능 이상자) 3. 사망을 포함한 1, 2, 3의 후유증	35일 이내 1년 이내 기한없음
결핵(BCG)	1. 폴염, 폴수염 2. 전신 과종성 BCG감염증 3. 사망을 포함한 1, 2, 3의 후유증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기한없음

의심되는 중증의 질병발생이나 사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 피해 발생은 심의대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 제시된 것은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고 기준이며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예방접종 심의위원회가 역학조사자료와 기타 필요한 근거에 의해 심의 결의로 확정하며 인과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만 보상한다.

부작용 발생보고와 국가보상 신청 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예방접종의 부작용, 또는 부작용이 의심될 때에는 이를 진단한 의사에 의하여 진단 14일 이내에 소정양식(보건소 비치)에 따라 관할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국가보상 신청은 보고된 환례(患例)에 한하여 진단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에는 본인이 되고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 중 최우선자가 된다.

즉,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子) ●부모 ●손(孫) ●조부모 ●형제자매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최우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우리 아기들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보호하려면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게해야 한다.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유념하고 적정량을 적시에 표준방법으로 접종 받을 경우 예방접종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으며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드물지만 이상체질 등 이유로 피할 수 없이 발생되는 위중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예방접종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지구상 전 인류를 전염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음호부터는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물, 엄마젖을 먹입니다' 가 연재됩니다.

본난은 우리 협회에서 제작한 미니문고 제37편 "영유아의 예방접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